

학 교 법 인 영 신 학 원

정 관

<개정 2019.08.29>

<개정 2021.04.26>

<개정 2021.08.31>

<개정 2022.04.21>

<개정 2022.08.08>

<개정 2023.09.08>

<개정 2023.12.21>

<개정 2024.04.17>

<개정 2025.08.26>

<개정 2025.11.03.>

<개정 2026.04.28>

학 교 법 인 영 신 학 원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 교육 및 실업고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신여자고등학교 및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개정 2011.03.18>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6나길 13에 둔다.<개정 2023.09.08>

제 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7.24, 2013.04.16>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8>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04.18, 2022.04.21>

제10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이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의 공개) ①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2조의2 - 제12조의6 삭제)<개정 2007.05.16>

제12조의2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 삭제

제12조의3 (위원회의 조직) - 삭제

제12조의4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삭제

제12조의5 (회의) - 삭제

제12조의6 (위원회의 간사 등) - 삭제

제 3 장 기 관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을 포함하고, 이사의 1/4인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개정 2007.05.16, 2008.11.27, 2010.02.23, 2014.10.21>
2. 감사 2인(감사 중 1인은 개방감사로 한다)<개정 2007.05.16, 2016.04.18>

제13조의2 (상임이사) ①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3조 제1호 임원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22.04.21>

②상임이사의 업무 및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22.04.21>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05.16>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05.16., 2022.04.21>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7.05.28, 개정 2010.10.28>

제15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05.16, 개정 2008.07.24>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7.05.16>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 수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07.05.16, 개정 2008.07.24>

④삭제<신설 2007.05.16, 개정 2008.07.24>

제15조의4 (추천감사의 선임) 삭제<신설 2007.05.28, 개정 2008.07.24>

제15조의5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영신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신설 2008.07.24>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8.07.24>

1. 학교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신설 2008.07.24>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신설 2008.07.24>

③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영신여자고등학교 2명,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명으로 한다.<신설 2008.07.24, 개정 2011.03.18>

④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8.07.24>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8.07.24>

제16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05.16>

③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3.04.16>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7.05.16>

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7.05.16, 개정 2008.07.24>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에 준용한다.<신설 2007.05.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05.16>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신설 2007.05.16><개정 2022.04.21>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신설 2007.05.16><개정 2022.04.21>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신설 2007.05.16><개정 2022.04.21>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05.16><개정 2026.04.28>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03.18>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 삭제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 삭제

제2절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19>
5. 본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19>
6. 본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회의 및 의결 정족 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22.08.08>

②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8.08.>

③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08.08.>

제23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05.16, 개정 2021.04.26>

②제1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21.04.26>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특례) - 삭제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8.26.><개정 2025.11.03.>

1. <삭제>

제27조의2 <삭제>

제 5 장 해 산

제2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03.18>

제29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1.03.18>

제30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03.18.><개정 2024.04.17.>

제 6 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31조 (임용) ①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1.03.18., 2016.04.18., 2022.04.21>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04.18>

③부장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8>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8, 2016.07.19>

⑤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22.04.21.>

⑥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심시기준 등에 관한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1.>

⑦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2.04.21.>

⑧법 제53조의2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 학교의 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1.>

제31조의2 (기간제 교원) ①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3 (교원의 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4 (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정관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의5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임용권자는 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07.19>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6 (전형결과의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2007.05.16>

제2관 신분보장

제32조 (휴직의 사유) 교원의 휴직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26>

제33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26>

제34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5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한 처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04.26>

②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한 처우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4.26>

③법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4.26>

제36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4.26>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9, 2021.04.26>

③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07.19, 2021.04.26>

④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21.04.26>

⑤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6>

⑥「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07.19, 2021.04.26>

제37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

라 교육공무원 에게 적용하는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삭제

제38조의2 (명예퇴직 수당) ①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수당의 지급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수당 지급 공고 : 임용권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 지급 신청기간, 수당 지급방법, 수당 지급일,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한다.<개정 2016.07.19>

2. 지급 심사·결정 : 임용권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16.07.19>

3. 지급대상자 통지 :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 수당 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3.18>

제38조의3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 삭제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38조의4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3.18, 2016.07.19>

제38조의5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1.03.18, 2016.07.19, 2021.08.31>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7.05.16, 개정 2021.08.31>
4.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신설 2021.08.31>
5.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1.08.31>
6. 기간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2.04.21>
7. 인사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04.21>
8. 전체 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신설 2022.04.21>
9.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의6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21.08.31>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1.08.31>

제38조의7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8.3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08.31>

③삭제<2021.08.31>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8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1.08.31>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8.31>

제38조의9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1>

②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8.31., 2022.04.21>

제38조의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8.31>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08.31>

제38조의11 (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39조 - 제48조 삭제)

제39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삭제

제42조 (징계 의결의 기한) - 삭제

제43조 (제척 사유) - 삭제

제43조의2 (위원의 기피 등) - 삭제

- 제43조의3 (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 삭제
- 제44조 (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선) - 삭제
- 제45조 (징계의결) - 삭제
- 제46조 (징계 의결시 정상 참작 등) - 삭제
- 제46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 삭제
- 제4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삭제
- 제48조 (운영세칙) - 삭제

제3절 제49조 내지 제62조 삭제

제4절 사 무 직 원

제6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11.2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04.2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8.11., 272022.04.2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04.21.><개정 2024.04.17.>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04.21><개정 2024.04.17.>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2.04.2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22.04.21>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8.11.27., 개정 2022.04.21>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1.04.26.><개정 2022.04.21>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신설 2021.04.26.><개정 2023.09.08>

10.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신설 2021.04.26.><개정 2025.08.26>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03><개정 2023.09.08>

③삭제<2021.04.26.>

제64조 (임용) ①사무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말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4.21>

②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2.04.21>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04.21>

제64조의2 (특별승진) ①사무직원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67조의2에 의거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8.11.27>
②제1항에 의한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1.27>

제64조의3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4.04.17>

제6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4>

제65조의2 (행동강령) 학교법인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3.04.16.><개정 2022.04.21.><개정2025.08.26.>

제66조 (보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4.12.24>

제67조 (신분보장) ①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4>
②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신설 2014.12.24>

제67조의2 (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11.27>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11.27, 개정 2011.03.18>

제67조의3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신설 2016.04.18.><개정 2022.04.21.>

제68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4.21.>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04.21.>

③ 사무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4.21.>

제5절 행동강령

제68조의2(행동강령의 목적)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의3(향응·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편의,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4(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5(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장(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68조의6(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또는 학교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7(교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68조의8(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에는 임원(감사 등), 소속 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3. 그 밖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9(세부사항의 위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정관에 따라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 인

- 제69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03.18>
②법인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 교

- 제70조 (교장 등) ①영신여자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을 둔다.<개정 2011.03.18>
②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을 둔다.<개정 2011.03.18>
③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4.04.17.>
④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13.02.01>
⑥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13.02.01>

- 제70조의2 (교장 등의 임용) ①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4.02.03>
②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신설 2014.02.03>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4.24>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04.24>

제71조 (하부조직) ①영신여자고등학교 및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개정 2011.03.18>

②사무조직에는 각 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03.18>

③제1항 및 제2항 각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1, 별표2-2와 같다.<개정 2022.08.08>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3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02.21., 2022.04.21>

- 제74조 (위원의 위촉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 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2.02.21>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74조의2제1항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2.02.21>
-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위촉한다.
-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2.21>
- ⑦삭제<2012.02.21>

- 제74조의2(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02.21>
- ②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02.21>

- 제7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6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7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2.21>

제78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2.02.21>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때<신설 2012.02.21>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제78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2.02.21>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2.02.21>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을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02.21>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02.21>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79조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04.21>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개정2025.08.26.>
14. 학교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7.24>
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8.07.24>
16.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5.08.26>
17.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1. 학부모 전체회의<신설 2012.02.21>
 2. 학교 홈페이지<신설 2012.02.21>
 3. 가정통신문<신설 2012.02.21>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2012.02.21>
 -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1. 학생 설문조사<신설 2012.02.21>

2. 학생회(대의원회)<신설 2012.02.21>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12.02.21>

⑥제1항제7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79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79조제1항제7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④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79조의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제79조의4(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신설 2012.02.21>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02.21>

③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3.12.21.>

④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79조의5(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제79조의6(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2.02.21>

제79조의7(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79조의8(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②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02.21>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신설 2012.02.21>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80조 (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제32조의제1항 및 제79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02.21><개정 2022.04.21.>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1., 2022.04.21.>

③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제80조의2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②안건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2.21><개정 2022.04.21.>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02.21>

제3절 운영경비 등

제81조 (운영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2.21>

제82조 (이사장의 감독 등) ①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2개월 이내에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02.21>

제82조의3 (이사회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1>

제82조의4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2.02.21>

제83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제84조 내지 제95조 삭제 <삭제 2015.08.04>

제 10 장 보 칙

제96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9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8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고명균	1904. 6. 1	5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44-2
이 사	한경일	1939. 5. 5	5	서울시 강남구 반포 278-32
이 사	김성규	1914.11. 8	5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46-18
이 사	이병현	1912. 2.19	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7-66
이 사	윤정희	1916. 2.19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산41-85
이 사	고병의	1917. 5.17	5	서울시 영등포구 독산동 378-347
이 사	이수완	1942. 3.11	5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23-13
감 사	곽 연	1935. 9. 6	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감 사	김중석	1947.12. 9	2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008 소라A가-801

제99조 이 법인의 조직 변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고명균	1904. 6. 1	6	서울시 동대문구 보문동 2가 5-12
이 사	한경일	1939. 5. 5	3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24
이 사	황종원	1922. 2. 1	6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6-19
이 사	김성규	1914.11. 8	3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46-18
이 사	윤정희	1916. 2.19	6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6-12
감 사	고경자	1939. 8.24	6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24
감 사	박상서	1933. 5.25	3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23

부 칙 (1041-8643 72.11.15.)

(시행일) 이 정관은 197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32.53-8 1974.1.7.)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 중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 연퇴직 한다.(결격 사유 해당자)

-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7.14. 1732.53-4151)

-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 중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퇴직 된다.(결격 사유 해당자)
-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12.16. 1832.53-7309)

-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 중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퇴직 된다.(결격 사유 해당자)
-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8.1.7. 1732.53-7603)

-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퇴직 된다.(결격 사유 해당자)
-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1.10.29. 1042-6954)

-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3)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5)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1983. 3.28. 1042.3-385)

(시행일) 이 정관은 1983. 3.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3. 8. 1042.3-270)

(시행일) 이 정관은 1984. 3.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19. 25422-144)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2.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6.26. 25420-536)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재단법인 청산문화재단)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3)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그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5)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1986. 9.22. 25422-831)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9.22.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7.12. 3. 25422-1198)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청산여자상업학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청산여자상업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사무는 영신여자고등학교의 장이

관장한다.

- (3)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청산여자상업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신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6.23. 25422-519)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2) (정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2조(정원) 중 “별표2” 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1992.12.29. 25422-2050)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를 정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 4.22. 81422-535)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정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2조(정원) 중 “별표2-2” 를 별첨과 같이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2) (정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2조(정원) 중 “별표2-2” 를 별첨과 같이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 8명(이사장 1명포함)

감사: 2인

(3)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31조의 3(교원의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날의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4) (신분보장)

①

②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준한다.

(5)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사로 한다.

②법인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6) (하부조직) ①영신여자고등학교 및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

②사무조직에는 각 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각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 (정원) 법인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 2-1, 별표 2-2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정원) 학교법인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2조(정원)중 “별표 2-1” 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2) (명예퇴직수당)

제38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②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

간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3)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제38조의 2(명예퇴직수당)의 ③ “별표3(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제39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부 칙 (1998.11.6. 81422-1604)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제39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영신여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및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 각각 법인 내에 조직하되 별도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99.3. 8. 81422-129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중 생년월일이 아래에 해당되는자는 제31조의 3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해당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 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 이전인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자:1999년 8월 31일

부 칙 (1999.12.15. 81422-34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4조(임용)중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면)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1조(임면)중

- ①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다만 보직교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임명권자에게 보고한다.
- ③

부 칙 (2000. 4 .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면)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1조(임면)중

- ①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다만 보직교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임명권자에게 보고한다.
- ③

부 칙 (2000. 6 . 3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1. 3 . 1 81450-2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4조 (임용)중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또는 근무 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③

부 칙 (2001. 5. 10. 81422-8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1. 81422-187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4조 (위원의 위촉 등) 중

①(생략).....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생략).....

- ④(생략).....
- ⑤(생략).....
- ⑥(생략).....
- ⑦(생략).....

부 칙 (2001. 9. 14. 81422-21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제교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1조의2(기간제교원)

- ①..... 그 기간 중 당해 학교의 장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1. 10. 행정 81422-6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면)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1조 (임면), 제32조(휴직의 사유), 제33조(휴직의 기간) 등.

부 칙 (2005. 1. 18 . 행정 54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3조의2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둔다. 이사7인(이사장 1명 포함), 감사 2인

제31조의5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신설

부 칙 (2006. 7 . 26 . 학교운영지원과-1198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정관 (준칙) 폐지 - 2005. 05. 23)

부 칙 (2007. 5 . 16 . 학교운영지원과-1269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 (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학교운영지원과-1353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4. 학교운영지원과-1727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27. 학교운영지원과-2943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02. 23. 사학지원과-280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8. 사학지원과-217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18. 학교지원과-230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5 학교지원과-1465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별표2-1, 별표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한다.

부 칙 (2012. 02. 21 학교지원과-229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01 학교지원과-18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4. 16 학교지원과-589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03 학교지원과-28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무직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능직의 직급과 호봉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1)영신여

자고등학교 일반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3호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일반직원 정원

총 계	3 명
일반직 계	3 명
5급(사무관)	1 명
6급(주 사)	1 명
9급(서 기)	1 명

(별표 2-1)

영신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분	교육행정	시설관리
총계	6	3
5급	1	
6급		
7급	2	1
8급		
9급	3	2

(별표 2-2)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분	교육행정	시설관리
총계	5	3
5급	1	
6급		
7급	2	1
8급		
9급	2	2

※사무직원의 직렬은 변동하여 임명이 가능함.

(별표 3)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월)/2]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비고) 정년잔여 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